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43 발의연월일: 2022. 12. 27.

발 의 자:이 용・이용호・이명수

엄태영 · 성일종 · 박 진

조경태 · 박대수 · 홍문표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홍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제2조(「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 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5조제5항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를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를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

- ·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도지사(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 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조(「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를 "외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또는 해제"를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

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 결정·신고·수리·지정"을 "허가·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허가·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관광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업계획의 승인, 관과숙박업 등의 등록 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경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관광진흥법」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인·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

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신고 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허가·신고 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u>에 따른다.</u>

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
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허가 의제 등) ①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u>허가</u>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를 한 것으로 본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u>당 허가</u>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2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u>하</u>	<u>ট্</u>
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	<u>다</u> .
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u>한다</u>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 저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u>다음</u>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9. (생략)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 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 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 납부)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 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

<u>정한</u>	사항	외에	0]	조에	따른
의제의	의 기준	<u> </u>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기	정기본	.법_	제24	4조부
터 제	26조끼	l 기의	규 ろ	성을 준	은용한
<u>다.</u>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	가 의
제 등) ①	
	<u>위원</u>
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서는 다음	·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제24조제4항은 제외 한다)을 준용한다.

제30조(기금 납부) ① ~ ④ (현행 과 같음)

<u><삭 제></u>

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 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행과 같음)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④ (생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④ (현 략)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 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 조 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2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

 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⑤
<u>제18조제1항</u>
<u>각 호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u>
의
<u>통보하여야 한다</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u>조성</u>
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
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1. ~ 2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사를 말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 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 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 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 또는 부 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ㆍ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 변경승인 또 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 다.

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 <삭 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신 설>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 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 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 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 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 다)에 따른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아 혅 했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5 가등의 의제) ① -----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 가 · 결정 · 해제 · 지정 · 승인 · 협의 · 심의 · 신고 등(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 ----- 한다)에 관하여 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이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는 것으로 본다.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허가등----.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 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 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 ----- 한다. 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의제)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 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 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니 -----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u>가·인가</u> 등을 받거나 신고를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u> 한 것으로 본다.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 가 · 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허가 · 인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 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 특별자치도지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ㅣ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로 본다.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인가·검사 등의 의제(擬制) 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 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하며, 협의를 요청받은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u>제31조</u> 에 따라	② <u>제31조제1항</u>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	
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	<u>.</u>
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	
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허가 등의 의제) ①
대한 사업계획의 <u>승인</u> 을 받으면	<u>승인 또는 변경</u>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또는	<u>승인 등에</u>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허
으로 본다.	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1. ~ 14. (생 략)
- 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 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 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 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 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① (생 략)

<신 설>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 제33조(청문)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해당 인가 어가 ---.

- 1. ~ 1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 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 · 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1. 제<u>31조제1항</u>-----

대권도 진흥 및 대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2	2 2
현 	개 정 안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본계	
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u>허가·인가·승인·협</u>	<u>허가·신고 등에 관하여</u>
의 · 해제 · 결정 · 신고 · 수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
<u>지정</u>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	북도지사가 허가・인가 등의 관
다.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u>· 신고</u>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	2
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협의를</u>	<u><후단 삭제></u>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 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신고 등 의제 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